

「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광성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10. 7.
- 회부일자 : 2024. 10. 14.
- 상정일자 : 2024. 10. 14.

2. 제안이유

- 대지 안 조경 등의 조치가 어려운 농·어업을 위한 주택·창고,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한 조경 의무를 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의무 제외 대상 추가(안 제16조)
 - 농·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·창고, 농기계수리센터 및 유사 건축물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건축법」 제42조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의 건축주는 조례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되, 예외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에서 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며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가 곤란하거나 조치가 불합리한 경우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지자체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대지 안 조경 등의 조치 의무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경감하고 규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16조(대지의 조경)에서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 의무 예외 대상으로 조건을 충족한 농·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·창고 또는 농기계수리센터 및 유사 건축물을 추가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저촉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